

제12권: 2004. 9. 17.

기업농의 조건: 가능성과 전망

김정호 선임연구위원

1. 왜 기업농인가?	1
2. 기업농의 개념과 성격	1
3. 기업적 벼농사의 조건과 가능성	2
4. 기업적 농업경영의 존재 형태와 사례	6
5. 기업농의 전망과 정책과제	11

한국농촌경제연구원

연구 담당: 김정호 선임연구위원 /02-3299-4253 jhkim@krei.re.kr
자료 문의: 지성구 연구성과관리팀장 /02-3299-4224 jiseko@krei.re.kr

- 우리 연구원은 일부 연구결과를 'KREI 농정연구속보'로 간결히 정리하여 정책 담당자나 농업인 등에게 신속히 배포하고 있습니다.
- 이 자료는 우리 연구원 홈페이지(www.krei.re.kr)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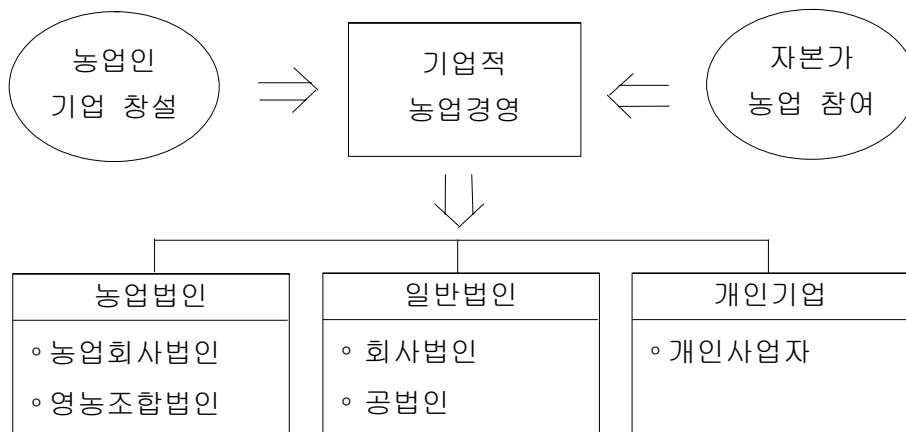
1. 왜 기업농인가?

- DDA 협상, 칠레와의 FTA 발효 등 농업을 둘러싼 여건이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, 개방화 시대에 대응한 농업경영의 형태로 기업농이 거론되고 있다. 기업농을 통하여 우리나라 농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여보자는 것이다.
- 그렇다면 농업의 현실에 비추어 기업농은 성립 가능하며 어떤 형태로 존재할 수 있는가?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농업이 가족농을 근간으로 다양한 농업경영체가 공존해야 한다는 인식 하에 기업적 농업경영의 가능성과 조건을 검토하고 앞으로의 전망과 과제에 대하여 정리하고자 한다.

2. 기업농의 개념과 성격

- 기업농은 가족농에 대응하는 의미로서 ‘기업적 농업경영’을 약칭하여 부르는 용어이며, 농업경영의 기업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.
 - 첫째는 가족농의 발전적 형태로서, 기존 농가(농업인)가 각자의 생산수단을 각출하여 기업을 구성하는 방식이며,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농업법인이 여기에 해당된다.
 - 둘째는 자본가(민간기업)의 진입 형태로서, 자본가가 농지 등의 생산수단을 구입하고 노동자를 고용하여 농업을 경영하는 방식이며, 이러한 기업농으로 간척농지 경영이나 기업축산의 사례가 존재한다.

그림 1. 기업농의 성립 형태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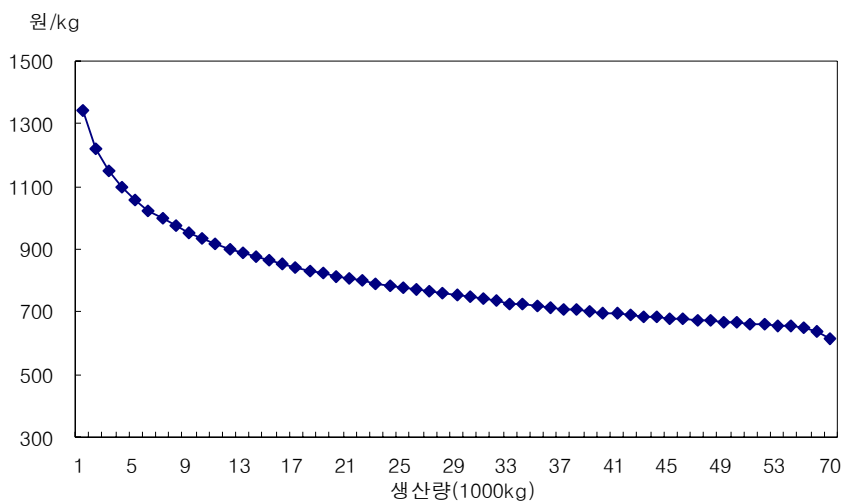
- 기업농의 경영체 형태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.
 - 첫째는 「농업농촌기본법」에 의하여 설립되는 농업법인으로 회사법인 형태와 영농조합법인으로 구분된다. 회사법인은 상법에 근거하여 합자회사, 합명회사, 유한회사, 주식회사 등의 형태를 가진다.
 - 둘째는 농업법인에 해당되지 않는 회사법인과 공법인(공기업) 형태의 일반법인이다.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는 농업공사도 여기에 포함된다.
 - 셋째는 법인 형태가 아닌 개인사업자 혹은 개인농장을 운영하는 경우이다.

3. 기업적 벼농사의 조건과 가능성

□ 대농의 경제적 유리성이 뚜렷하게 나타나기 시작

- 최근 들어 대규모 경영의 유리성이 뚜렷하게 나타나면서 경제적 측면에서는 기업농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(scale economy)이 성숙되고 있다.
 - 「쌀생산비 통계」를 이용하여 평균비용함수를 계측해 보면(그림 2), 생산규모가 커질수록 평균비용은 우하향 곡선을 그리면서 계속 낮아지고 있다. 비용곡선 상으로는 약 100ha 규모까지 비용이 감소하는 경향이다.
 - 현행 기술체계에서 영농규모 확대에 따른 수확량 감소는 크지 않으므로, 벼농사 규모를 확대함으로써 순수익을 지속적으로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.

그림 2. 벼농사의 평균비용곡선, 2000년



- 그러나 벼농사의 기술체계를 고려하면 생산규모를 무한정 확대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. 이양부터 수확까지 벼의 생육단계에 따라 작업시기가 정해져 있고, 농기계의 부담능력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.
 - 현재의 보편적인 이양농법과 대형기계화체계(트랙터 100마력급, 농기계 운전자 1인과 보조노동력 1인) 1세트를 이용하여 경작 가능한 벼농사 규모는 최대 30ha 정도로 분석되고 있다.
 - ※ 가족농의 중형기계화체계(트랙터 50마력급) 적정규모는 6~7ha 정도이다.

□ 벼농사 10a당 기업이윤은 자작지 26만원, 임차지 46만원(추정)

- 벼농사의 기업적 경영으로 자작지 경영, 임차지 경영, 작업수탁이 가능하며, 자작지나 임차지 경영에서는 영농규모화를 통하여 기업이윤을 확보할 수 있다.
 - 자작지 경영은 10a당 쌀 판매수입(102만 1천원)에서 재료비(8만 6천원), 농기계비(9만 8천원), 노력비(12만 6천원)를 차감한 71만 1천원의 이익이 발생하지만, 여기서 토지자본이자(45만 5천원)를 공제한 25만 6천원이 순수익이 된다.
 - 임차지 경영은 자작지 경영과 생산량이 동일하다고 가정하여 10a당 쌀 판매수입에서 재료비, 농기계비, 노력비뿐만 아니라 논임차료(25만 5천원)를 제하고 45만 6천원의 순수익을 실현한다.
 - 작업수탁은 10a당 작업수수료 수입(20만 9천원)에서 농기계비를 차감한 11만 1천원의 순수익을 실현한다.

표 1. 기업적 벼농사의 수익구조(2003년 기준, 천원/10a)

	자작지 경영	임차지 경영	작업수탁
조수입	쌀 판매수입: 1,021	쌀 판매수입: 1,021	작업수수료 수입: 209
비 용	재 료 비: 86	재 료 비: 86	농기계비: 98
	농기계비: 98	농기계비: 98	
	노 령 비: 126	노 령 비: 126	
	토지자본이자: 455	논임차료: 255	
	소 계: 765	소 계: 565	소 계: 98
순수익	256	456	111

주: 조수입=평년단수(정곡 487kg)×정부수매가(167,720원). 비용은 2003년산 쌀생산비 통계.
 토지자본이자=논가격(평당 37,600원)×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(4%)
 작업수탁요금(천원/10a): 육묘 75, 경운정지 45, 이양 30, 방제 8, 시비 6, 수확 45

- 예컨대 기업경영 방식으로 연간 순수익 1억원 정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작지는 39ha, 임차지는 22ha를 각각 경영해야 하는 것으로 시산된다.
 - 자작지의 경우에 토지자본이자의 산정방법(예금금리 적용)에 따라 순수익은 증감할 수 있으며, 작업수탁의 경우에 농기계운전자 인건비를 산입하면 순수익은 적자가 되어 경영이 성립하지 못한다.

□ 농지 출자에 의한 기업농은 농지임대료 이상의 배당이 가능해야

- 그렇다면 농지 출자에 의한 주식회사 형태의 농업회사가 성립할 수 있을 것인가? 기업농의 경영자는 출자자에게 출자 농지에 대한 배당금을 보장하면서, 기업이윤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인가?

- ① 농지 출자자에 대해서는 「농지임대료」 이상의 이익배당이 보장되어야 한다.
 - 소유권을 출자한 농지는 지가 평가에 근거하여 회사의 자본금으로 귀속되고 출자자는 출자지분(또는 주식)에 해당하는 배당금을 받게 된다.
 - ※ 농지의 소유권 행사는 기업농 경영자 또는 법인에 귀속된다.
 - 농지 출자자는 주식의 형태로 재산권을 행사하게 되므로 적절한 투자수익이 보장되면 농지를 출자할 수 있으며, 따라서 기존의 농지임대료 수준이 농지 출자자가 요구하는 배당금의 하한이 될 것이다.
 - 자작지를 출자하는 경우에는 기존 농업소득만큼의 배당금을 기대할 것이며, 출자자가 별도의 노임소득을 얻을 수 있다면 요구 수준은 낮아질 수 있으나, 기업농 경영자가 지불 가능한 출자 배당은 최대 「토지자본이자」 수준으로서 배당금의 상한이 될 것이다.
- ② 기업농의 경영자(자본가)는 경상운영비와 출자자 이익배당을 공제하고서도 적절한 「기업이윤」을 획득할 수 있어야 한다.
 - 기업 경영자는 규모경제와 범위경제를 통하여 수익을 창출함으로써 기업의 성장은 물론 기업가치 제고(예: 주가 상승)를 도모할 수 있다.

□ 농지 집단화 및 농한기 수익사업 창출이 기업적 농업경영의 관건

- 토지이용형 농업을 기업적으로 경영하기 위해서는 농지 획득, 자본과 인력 조달, 수익성 확보 등의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.

① 농지의 소유와 임차

- 현행 농지법 하에서 농업인이 아닌 비농민(민간기업 포함)의 농지소유는 불가능하지만, 농지임차나 작업수탁에는 특별한 제약이 없으므로 임차지경영이나 수탁영농의 기업농은 제도적으로 가능하다.

※ 현행 농지법에서는 1996년 이전에 소유한 농지에 대해서만 임대가 허용되지만, 농지법 개정안에는 임대를 전제로 한 농지소유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법이 개정되면 임차지경영이 훨씬 용이해질 것이다.

② 경작농지의 집단화

- 논이 하나의 농장으로 집단화되지 않으면 농기계의 작업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으며, 따라서 농지의 집단화는 대규모 영농의 필수조건이다.
- 농지를 집단화하고 대구획으로 정비하게 되면 노력과 비용의 절감은 물론 토양의 물리적 특성을 개선함으로써 생산성 향상도 기대할 수 있다.

③ 농지임차료 지불능력

- 영농규모가 클수록 토지순수익이 증가하므로 경제적으로는 대규모 기업농의 임차료 지불능력이 높지만, 가족농의 경우 노동력과 농기계는 기존 경지에 투입된 고정비용(overhead cost)이기 때문에 추가소득 확보를 위하여 다소 높은 임차료를 지불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가진다.

④ 자금 조달과 전문인력 확보

- 대형기계화체계(트랙터 100마력, 6조식 승용이앙기, 산물콤바인, 트럭 등) 1세트를 구비하기 위해서는 대략 1억 5천만원이 소요되고, 연간 운영비용으로 감가상각비 2천만원 및 수리비 70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.
- 농기계의 가동률을 높이는 것이 벼농사의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숙련된 농기계운전자 확보가 중요하다.

⑤ 부대사업과 소득원 개발

- 논농사의 직접 노동시간은 연간 4개월에 불과하므로 사원을 연중 고용하기 위한 수익모델이 개발되어야 하며, 특히 상근 직원에 대하여 월정액의 보수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농한기 사업을 확충해야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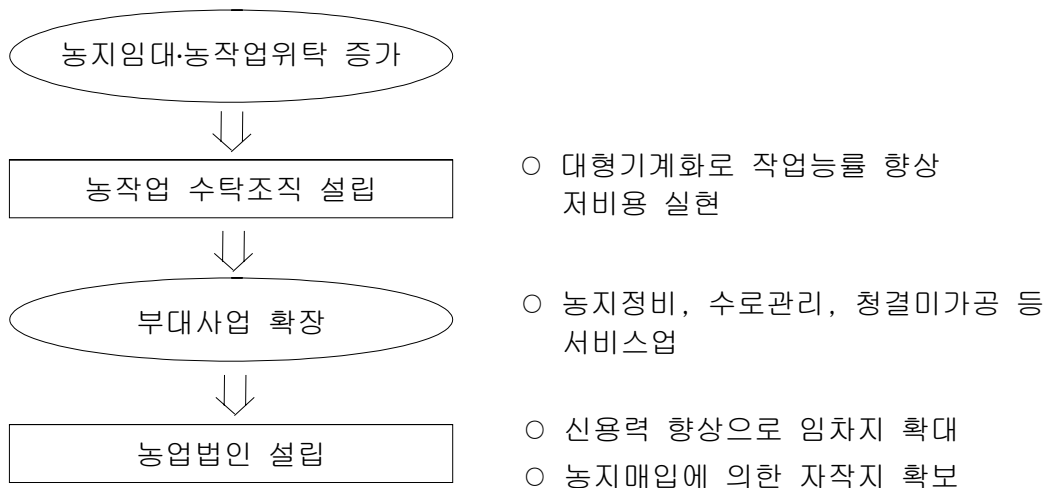
※ 성공적인 위탁영농회사의 대부분이 청결미 가공공장을 운영하고 있다.

4. 기업적 농업경영의 존재 형태와 사례

- 우리나라 농업은 가족농을 근간으로 하여 기업의 농업경영은 허용되지 않고 있으며(간척지는 예외), 1990년부터 가족농의 발전적 형태로서 농업법인 제도가 도입되어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이 운영되고 있다.
 - 기업적으로 농업을 경영하는 경영체에는 농작업 서비스사업형 농업법인, 협업경영형 농업법인, 식품산업의 농업투자, 공기업의 농업경영 등이 존재한다.

□ 농작업 서비스사업형 농업법인

[개요]



[특징]

- 노동력 부족으로 농작업을 위탁하는 농가가 증가함에 따라 대형농기계 체계를 도입하여 작업 효율성과 사업성을 높이는 경영 형태이다.
 - 수탁작업 규모가 늘어나고 일부 위탁농가에서 농지의 장기임대를 선호함에 따라 대규모 임차지경영도 가능하게 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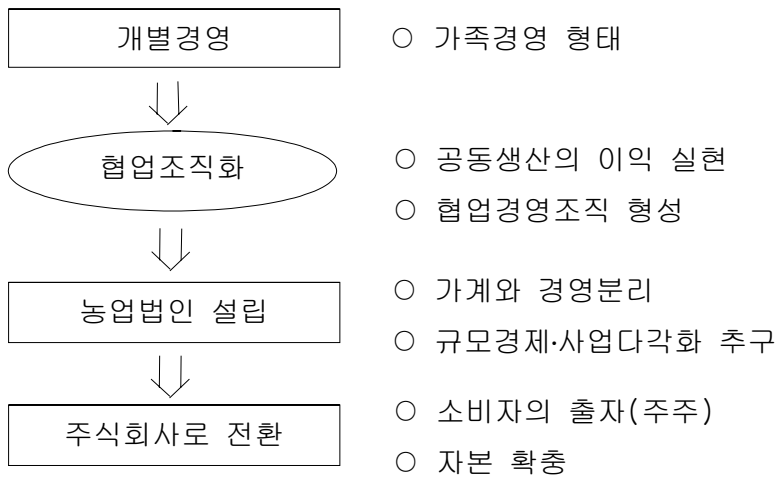
[사례]

- 소사뜰영농조합법인(경기 평택)은 1995년에 농업인 5명이 설립한 법인으로 지역 농가 220호(논 420ha)와 벼농사를 대행하고 청결미를 가공·판매하고 있다.
 - 계약농가에 대하여 육묘부터 수확까지 농작업을 대행하고, 수확한 벼의 일부는 매취하여 건조·저장·가공(청결미)·판매사업으로 수익을 올리고 있다.

- 매배농업회사법인(충남 연기)은 1991년에 농업인 4명이 공동출자하여 설립한 위탁영농회사로서 마을의 논 대부분(160ha)을 수탁작업하는 ‘마을영농집단’을 형성하고 있다.
 - 농한기사업으로 도정공장과 한과공장을 운영하면서 지역주민을 고용하여 농외소득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.

□ 협업적 농업경영

[개요]



[특징]

- 영세규모 가족농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뜻이 맞는 농업인이 모여 협업경영 방식으로 운영하기 시작하여 농기업으로 발전하는 형태이다.
 - 현재 운영되고 있는 대부분의 농업법인(영농조합, 농업회사)이 협업적 농업경영의 형태를 띠고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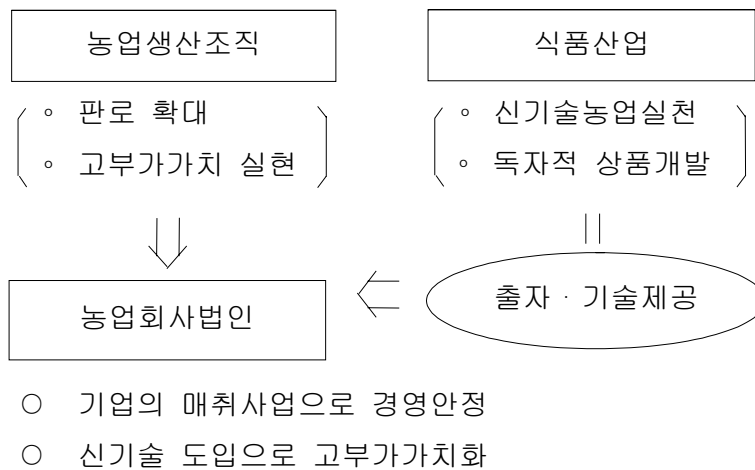
[사례]

- 대관령농업회사법인(강원 평창)은 농가에 농작물 육묘를 공급할 목적으로 1991년에 6명의 농업인이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하여, 전국 최초로 자동화 육묘장 4,000평을 공동으로 경영하면서 공동생산·공동출하의 이익을 실현하고 있다.
 - 고랭지의 기후 특성을 이용하여 건설한 우량묘를 생산한다는 유리성을 살려 배추, 양배추, 고추 등 17개 품목의 종묘를 공급하고 있다.

- 합자회사 현대서산영농법인(충남 서산)은 2001년에 서산간척지농장의 영농사원 70여 명이 출자하여 설립한 농업회사법인으로, 2003년 현재 소유지 416ha와 농작업수탁 2,600ha 등 총 3천여ha의 대규모 영농을 실현하고 있다.
 - 항공 직파 방식으로 쌀 생산비를 절감하고 있으나, 인건비 부담으로 현재 정곡 80kg당 쌀 생산비는 8만원 수준이다.
 - ※ 2000년 정곡 80kg당 생산비(토지용역비 제외)는 4만 5천원이었다.

□ 식품산업의 농업투자

[개요]



[특징]

- 식품업체가 독자적인 기술과 브랜드의 상품을 유지하기 위하여 원료 생산자인 기업농에게 사업자금과 기술을 제공하는 형태이다.
 - 계열화업체인 경우에는 특정 분야의 농장을 직영하는 경우가 많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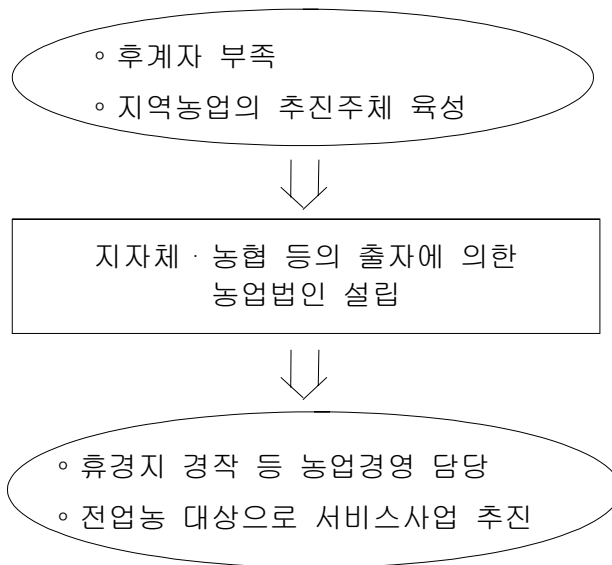
[사례]

- 풀무원식품(주)은 유기농산물을 계약재배로 수매하고 있으며, 특히 두부와 콩나물에 사용되는 국산 콩의 우량종자를 보급하고 기술 지도를 담당하고 있다.
- (주)하림은 국내 육계 시장의 25% 정도를 점유하는 계열화업체로서 닭고기 가공회사인 하림식품(주)과 계약에 의하여 육계를 위탁사육하는 농가에 종계를 공급하는 직영농장을 운영하고 있다.

- 농업회사법인 조인(주)는 산관계 분야의 계열화업체로 물류를 전담하는 GP센터(선별포장센터)를 중심으로 부화장 3개소, 육성계농장 4개소, 실용계농장 5개소를 운영하고 있다.

□ 농업공사의 농업경영

[개요]



[특징]

- 후계자 부족 등으로 미래농업의 주체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지역농업의 진흥을 위해서는 공기업 또는 제3섹터 형태의 농업경영체가 필요하며, 나아가 자본기술 집약적 농업의 혁신주체로서의 역할도 기대된다.

[사례]

- 구미원예수출공사는 1997년 구미시가 출자하여 설립한 농업공사로서 직영농장인 25,000평의 유리온실에서 장미를 재배하여 수출하고 있으며, 여기서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2000년에 구미원예농단(농업회사법인)을 설립하고 유리온실 3만평을 농가에 분양하여 협업단지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.
 - 구미원예수출공사는 직영농장과 협업단지를 통하여 국화, 장미, 접목 선인장 등의 안정적 물량을 확보하여 강한 시장교섭력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있다.

[일본의 기업농 제도]

- 일본은 농지소유는 물론 임차에 대해서도 경작자주의(농작업 상시종사자만이 농지의 권리취득 가능)를 채택하여 가족농을 견지해 왔으나, 최근 들어 주식회사 농업법인의 농지취득 허용, 농업특구를 통한 일반회사의 임차경영 허용 등 일련의 제도 개혁을 통하여 기업농의 기반을 확충해 나가는 경향이다.
- 농업생산법인 제도는 1962년에 '지역농업 공동체' 개념으로 도입되어 현재는 기업적 농업경영체로 정착하고 있다.
 - 1993년 농업생산법인의 사업요건 완화: 농업경영 이외의 관련사업 허용, 농업인 이외의 자본출자 가능
 - 2000년 주식회사형 농업생산법인의 농지소유 허용, 농업생산법인에 대한 일반기업의 자본출자 및 경영권 지배 가능
- 기업에 대한 경제규제완화 차원에서 2002년 12월에 「구조개혁특별구역법」(약칭 특구법)을 제정하여 2004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다.
 - '농업특구'는 전국에서 41건이 인정되어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유형의 규제 완화를 시도하고 있다.
 - ① 주식회사나 비영리법인(NPO) 등 다양한 법인의 농업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특구로서, 지자체가 일정규모의 유휴농지가 존재하는 지역에 대하여 특구로 설정한 계획을 작성하여 총리의 인정을 받아야 함. 인정을 받으면 농지법 특례가 인정된다.
 - ② 최근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도시농촌교류를 더욱 촉진하기 위하여 농가, NPO, 주식회사 등도 시민농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특구로서, 특정농지대부법과 시민농원정비촉진법의 특례가 인정된다.
 - ③ 현행 0.5ha로 되어있는 농지취득 하한면적을 완화하는 특구로서, 소규모 농지를 도농교류용으로 확대하여 지역농업의 활성화가 기대된다.
 - ④ 농업관련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특구로서, 농업생산법인의 경영발전과 다각화를 통하여 소비자의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있다.
 - ※ 최근 보도에 의하면 일본 정부는 2005년부터 일반법인의 농지임차경영을 전면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라고 알려진다.

5. 기업농의 전망과 정책과제

- 농업 여건의 변화에 따라 기업적 농업경영의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.
 - 농업생산력의 변화: 노동집약적인 생산방식 하에서는 가족농이 활력을 가졌으나, 기계화·자동화 등으로 기업조직이 무리 없이 진입할 수 있게 되었다. 양돈과 양계 등 축산경영은 기업농이 정착되고 있으며, 경종농업에서도 신선채소류의 공장식 주년생산 체제는 기업농화할 가능성이 크다.
 - 경영기술의 요구: 상업농 진전으로 생산부터 판매 내지는 소비 동향까지 파악하고 대응하는 기술이 불가결하며, 특히 마케팅 전략과 기술은 기업경영이 유리하다. 대부분의 농가가 농산물 생산에 전념하고 판매는 산지유통센터를 비롯하여 전문유통업체에 의존하는 것도 이러한 때문이다.
 - 경영체로서의 영속성: 가족 내의 협업 기능이 약화되면서 농가간의 협력 내지 공동경영을 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. 지역농업 측면에서 가족농은 후계자 단절로 농업경영이 소멸할 수 있으나, 기업농은 신규인력을 통하여 경영의 영속성이 확보되는 이점이 있다.

- 기업적 농업경영이 농업 발전에 비추어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, 주식회사의 농업 참여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지적된다.
 - 첫째, 기업이 많은 농지를 경영하면 할수록 지역의 농업인을 노동자화하게 되고, 그에 따라 지역의 고용 기회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.
 - 둘째, 주식회사는 본래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전제로 하는 자본결합체이기 때문에, 주식의 자유 양도에 따른 농업경영체로서의 불안정성이 내재한다.
 - 셋째, 자본력을 가진 주식회사가 농지를 구입하게 되면, 그로 인하여 지역적으로 토지 투기나 농지 가격의 급등과 같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.
 - 넷째, 전통적으로 이어져 내려온 지역사회의 농업 발전이나 농촌사회 구조가 크게 바뀌게 되며, 자칫 지역사회가 해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.

- 따라서 기업농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농을 근간으로 다양한 농업경영체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.
 - ① 농업 진입의 관련제도
 - 농업법인에 외부자본과 경영전문인력의 참여를 촉진하고, 지자체나 제3섹터가 농업법인을 설립·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.
 - 「지역특화발전특구법」의 농업특구 제도를 활용하여 기업적 농업경영을 유치

하고 지역농업 혁신을 위한 시범기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.

② 농업경영체 지원을 위한 정책

- 농업법인의 창의적인 경영활동을 제약하는 규제사항(예: 농업법인의 현물출자 규정, 부대사업 규정)을 개선해야 한다.
- 농업경영체 등록제도를 도입하고, 특히 명실상부한 사업체로 활동할 수 있도록 사업자등록 제도에 포함시켜야 한다.

③ 농업경영체 관련세제

- 농업법인의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과세특례를 비롯한 세제적 지원(예: 농업용 재산에 대한 취득세, 등록세 면제)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.
※ 현재 농업인은 농지매입 시 취득세와 등록세 50% 감면, 상속 때에는 전액 면제된다.
- 농업경영체에 대하여 농업소득세(지방세)와 법인세(국세)가 이중 부과되는 불합리한 관련세제를 개선해야 한다.
- 작물재배업의 농업법인에 대해서도 축산기업과 같이 조세특례제한법의 중소기업의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.

KREI 농정연구속보 제12권

기업농의 조건: 가능성과 전망

등 록 제6-0007호 (1979. 5. 25)

발행인 이정환

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

130-7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4-102

전화 02-3299-4000 팩시밀리 02-965-6950 [http:// www.krei.re.kr](http://www.krei.re.kr)

인쇄처 (주) 문원사 02-739-3911~5

- 이 자료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.
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.
- 이 연구는 본연구원의 공식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.